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이영실 의원 외 28명
- 의안번호 : 제1024호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 및 개정된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고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가로수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조례 제명을 수정함(안 제7조의2).
- 다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.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,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는 한편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도시숲법”)은 생활권 숲의 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 등(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)의 체계적 조성 및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음.<sup>1)</sup>

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하던 도시림과 생활림을 비롯해 가로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(타법개정)되고 동 법에 신설(이관)<sup>2)</sup>되었음.

이에 시의회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<sup>3)</sup>하여 이를 반영한 바 있고, 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에서 단서 조항을 통해 ‘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’은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가로수조례”)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가로수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로수의 정의와 관련한 사항 중 「도로법」 제10조 등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<sup>4)</sup>이 있는바, 이를 바로잡는

1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1. 6. 10] [법률 제17420호, 2020. 6. 9, 타법개정]

2) 「산림자원법」 제2조(정의) 4. “도시림”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·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, 면 지역과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.

5. “생활림”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가로수”란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.

3) [시행 2022. 7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300호, 2021. 12. 30., 제정]

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됨.

- 도시숲법 제2조(정의)에서 “가로수”란 「도로법」 제10조5)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·관리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시행령에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6)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,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안 제3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안 제7조의2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던 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이관(신설)된 것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- 안 제8조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하되,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‘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’에 따른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됨.

---

4)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정의 부분 개정(2009년) 이후, 「도로법」 전부개정 사항 미반영

5) 「도로법」 제10조(도로의 종류와 등급)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.

1. 고속국도(고속국도의 지선 포함)
2. 일반국도(일반국도의 지선 포함)
3. 특별시도(特別市道)·광역시도(廣域市道)
4. 지방도
5. 시도
6. 군도
7. 구도

6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,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

서울시는 동 조례 16조(점검)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, 민원에 의해 가로수를 조치할 때에도 기본계획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가지치기를 시행하도록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·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.